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66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□ 제안이유

- 기금관리 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예탁을 “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”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“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”로 개정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“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출납원”으로 함.

□ 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56 조

□ 기타 참고자료 : 별 첨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제 2 항중 “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”을 “고율의 금융상품”으로 하고,
동조제 4 항의 “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운용관과 기금
출납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